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53
----------	-----

2023년 3월 10일  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2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3. 상정일자

○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3월 10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)

1. 제안이유

○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보다 하향되었다는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학원·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‘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’을 ‘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’으로 함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53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원·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원·교습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‘재난안전의무보험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는 것으로,

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 9일 ‘재난안전의무보험’의 총괄관리를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을 개정하였고<sup>1)</sup>, 이에 따른 후속조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10. (생략)

10의2. “재난안전의무보험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(共濟)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
11~12. (생략)

제76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)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·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치로 2021년 6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<sup>2)</sup>

- 한편 같은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을 분석·평가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<sup>3)</sup>,

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교육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분석·평가하여 2022년 7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 기존 학원·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‘1억원 이상’에서 ‘1억 5천만원 이상’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동 조례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<sup>4)</sup>
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<sup>5)</sup>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

---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

2.~6. (생략)

7.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(생략)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)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”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.

1. 사망의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
② (생략)

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6조3(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·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,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4) 교육부,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시도교육청 학원 조례 개정 권고(2022.7.1.)

5) 변지석(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), ‘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추진 방향’, 국회도서관, 2021.10.18.

니다.

- 다만,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 보상책 마련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며, 학원·교습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지도·점검 등을 통해 화재 및 차량 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적·적극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1억원”을 “1.5억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조례 시행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원·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</p> <p>①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·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1인당 배상금액 <u>1억원</u> 이상</p> <p>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(단,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)</p> <p>3.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1.5억원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